



축산업의 세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세무 · 회계 - Tax accounting

이번호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며 과세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모든 축산업자들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해 본다.

다음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개정될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길 바라며, 오로지 축산업자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면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본다.

1. 축사건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축사 건축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10%만큼 증가되어 타 업종에 비해 공사비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축사의 건축비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고 사업의 초기에 발생되기 때문에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차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차입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포함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주택의 건축용역은 생활필수품인 의식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바, 이는 같은 입법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축사의 건축용역도 면세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자기의 가축을 사육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타인의 가축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Tax accounting_ 세무 · 회계

을 사육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육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육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무처리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되는 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기업적으로 위탁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해 면세하고 있는 바, 영세규모로 위탁사육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형평성의 관점에서 당연히 면세대상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본다.

3. 도축세의 폐지 및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도축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축장의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어서 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그 만큼 축산물의 판매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축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개정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해줘야 할 것이다.

4.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의 상향조정

축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간 1,20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조정하여 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1996년도에 비과세소득금액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동결하여 증액하지 않는데 그동안의 물가수준과 소

득수준이 배이상 증가했으므로 최소한 비과세소득의 기준도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개정이 있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사육두수에 대한 비과세기준은 닭의 경우 10,000수에서 15,000수로 2008년도부터 개정되었다.

5.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선

중계 및 종돈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년수가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축산업용 시설장치와 동일하게 5년으로 상각해야 한다.

그러나 중계의 경우 내용년수가 2년이 되지 못하는데도 5년간 상각함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적어 소득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에 대한 내용년수에 대한 규정을 실제 사육기간에 맞게 신설해야 한다.

또한 공장 및 창고에 대한 내용년수는 일반건축물의 내용년수의 절반으로 단축상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사도 공장과 같이 단축상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6. 축산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경기도 포함)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종업원 100명 이내이면 소득세의 30% 또는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반해 축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10명 이상이면 공제해 주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제조업자와 동등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7. 축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

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바, 농지와 마찬가지로 8년 이상 사육한 축사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농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이월과세의 대상으로 개정해야 한다.

8.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축산용 부동산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는데 전액감면대상을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하여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월과세의 대상인 농장을 판정할 때 농장소재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사육하던 농장이면 모두 이월과세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의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1인당 2,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 기간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간 감면해주는 것을 폐업시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해야 법인전환 후에도 농민으로서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어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

Tip.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업인만의 방법은?

최근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출하·가공·수출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작업을 대행,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농조합을 설립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위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에 현물출자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세액 면제 신청서에 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및 현물출자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http://call.nts.go.kr> ☎ 1588-0060)